

## □ 정부시책 □

## 산업자원부, 전기용품 형식승인제도 전면개편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원장 : 주덕영)은 전기용품 형식승인 제도를 출범 24년만에 국민이 마음놓고 사용할 수 있는 안전한 전기용품이 보급될 수 있도록 산업자원부와 협의 국제추세에 맞게 전면 개정중에 있음

▣ 개정될 내용을 살펴보면,

- 전기용품으로 인한 소비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정부 주도하에 안전 인증하던 것을 민간기관으로 이양
- 정부에서 수행함에 따라 대상품목 확대 및 인증절차 등을 행정규제로 보아 안전관리 강화가 어려웠던 부분을 민간기관이 수행함으로서 해소
- 제품의 특성 및 성능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형식구분별로 승인하던 것을 모델별로 인증
- 제품의 전압별(110V, 110~220V), 소비전력 크기별(100W이하, 100~200W, 200~500W, 500~1000W,

1000W초과)로 구분하여 승인하던 것을 특성 및 성능을 구분하는 모델별로 승인함으로서 국가간 상호인증 협상 용이 및 안전성 확보

- 수입전기용품 형식승인을 수입판매업자와 외국제조업체에게 하던 것을 외국제조업체에게만 직접 인증
  - 영세한 수입판매업자의 도산 등으로 인한 아프터서비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생산과정의 안전성 확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기용품의 제조에서 판매 및 아프터서비스까지 제품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게 됨
- ▣ 금번 전기용품안전관리법 개정추진으로 수입판매업자의 형식승인으로 인한 아프터서비스 등 전기용품 안전성 확보의 문제점을 해소하는 한편 국제기준에 맞는 전기용품 안전인증제도 운영으로 국제 통상마찰 등의 해소가 기대됨

## 산업자원부, 전기용품 형식승인 ONE STOP처리 서비스체계 구축

▣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원장 : 주덕영)은 전

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거 운용되고 있는

전기용품형식승인 처리업무를 형식승인신청부터 승인서 발급까지 민원인이 관공서에 찾아오지 않고 인터넷이나 FAX, 지정시험기관을 통하여 신청하면 일괄 처리하여 주는 ONE STOP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여 '99. 6. 14일부터 시행.

- 전기용품형식승인은 전기적인 지식이 부족한 소비자가 전기용품 사용으로부터 감전이나 화재로 인명피해나 재산상의 손실을 입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기술표준원에서 정한 안전기술기준에 적합한 제품만 제조판매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미국, 유럽, 일본등 세계 120여개국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선진국일수록 안전대상품 목 및 안전기술기준을 많이 관리하고 후진국일수록 적게 관리하고 있는 특징이 있음
- 전기용품 형식승인절차는 전기용품 제조업체에서 15개 지정시험기관중 한곳에 시험의뢰 시험성적서를 발급받아 기술표준원에 형식승인 신청하는 3단계 체제로 지금까지는 민원인이 직접 방문 접수함에 따라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불편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청하면 기술표준원을 직접 방문할 필요없이 앓아서 형식승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음
- 기술표준원 인터넷(E-mail주소 : psd@mail.ats.go.kr)이나 FAX(번호 : 02-

507-6875)에 의거 신청할수도 있고

- 지정시험기관에 제품시험 의뢰할 때 요청하면 해당시험기관에서 신청서작성 및 신청접수를 대행해 줄 수 있도록 함
- 한편, 기술표준원에서는 인터넷 E-mail 또는 팩스, 지정시험기관 대행 방법으로 접수된 형식승인 민원처리 진행상황을 인터넷을 통해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체계를 구축함과 동시에 형식승인 대상품목, 처리절차 및 시험수수료 등에 관련된 규정을 수록한 전기용품 형식승인 민원편람을 본원 인터넷 홈페이지(기관소식, 기관자료실)를 통해 관련 정보를 손쉽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였음
- 앞으로 기술표준원에서는 '99년부터 2000년까지 2년에 걸쳐 전기용품 안전기술기준을 양과 안전수준에서 IEC(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국제기준 체제로 전면 개편하여 전기용품의 안전성 향상으로 소비자를 보호함은 물론 내수품이 바로 수출품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고 민원 관련업무 처리현황 조사관리를 매년 2회씩 정례화하여 대민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기해 방문 및 전화 민원상담 등 의 민원발생량을 금년중에 30% 이상 감축하도록 할 계획임

## 산업자원부, 에너지 저효율제품 행정처분 강화

고효율기기의 보급 촉진을 위해 7월부터 에너지 효율기준 미달제품에 대한 단속과 행정처분이 대폭 강화된다.

산업자원부는 그간 최저 에너지소비효율 기준에 미달하거나 최대사용량 기준을 초과할 경우 일정 유예기간을 두고 시정하도록 해왔으나 7월부터 시정명령조치 없이 곧바로 생산·판매를 금지하도록 하는 등 행정처분을 강화한다고 지난 6월 25일 밝혔다.

산자부는 에너지 관련제도가 에너지 소비효율기준·효율표시·등급표시제 등으로 3원화 돼 있어 제조 및 판매업자, 소비자 등이 이를

제도를 이해하고 사용하는데 어려움을 겪음에 따라 이를 「효율관리 기자재제도」 하나로 통합, 일원화해 관리키로 했다. 또 최저효율기준에 미달하는 불법·불량제품의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효율관리기자재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실시키로 했다.

한편 산자부는 최근 형광등 제조업체 10개 사의 24개 제품을 대상으로 최저효율기준 여부를 조사한 결과 통일전구의 형광램프 1개 모델을 적발, 6개월 이내에 효율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할 경우 생산 및 판매를 금지토록 개선명령을 내렸다.

## 산업자원부, UPS분야 KS규격 'C4310' 보완 개정 추진

기술표준원(원장 : 주덕영)이 관련업계로부터 외면받아왔던 무정전전원공급장치(UPS) 분야의 KS규격을 보완하는 한편 심사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실무작업에 들어갔다.

7일 기술표준원 측은 UPS분야 국가표준규격인 KS C4310이 관련 업계로부터 국가표준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오는 10월까지 규격보완 개정 및 기술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기술표준원 측은 6일자 관보를 통해 국제전기협회(IEC) 기준에 맞춘 다양한 UPS형식을 KS C4310 규격에 추가하는 내용의 KS 규격 개정 입법예고를 마쳤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UPS분야 규격 보완내용은 두달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오는 10월께 확정되는데 기존의 단독 UPS 외에 병렬 교류 UPS, 여분 교류 UPS등의 다양한 제품 규격을 보완·제시하고 있다.

기술표준원은 또 UPS업체들의 KS심사절차인 심사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5일부터 9일 까지 5일간 10여개 UPS업체를 표본업체로 선정, 이를 업체를 대상으로 KS심사기준 마련을 위한 제조공정 실태조사에 들어갔다.

여기에는 △표준화일반 △자재관리실태 △ 공정관리실태 △제품품질관리실태 △제조설비

관계 △검사설비관계 등 6개 분야가 포함된다.

기술표준원의 관계자는 『오는 10월까지 KS C4310규격 보완 및 KS심사기준 확정 공고절차를 마치고 UPS업체들의 실질적 KS심사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재정경제부, 산업연구용품·첨단시설재 등 관세감면 대상품목 확대

산업연구용품과 공장자동화 및 첨단산업 시설재의 수입관세 감면 대상품목이 신규·확대 지정됐다.

재정경제부는 7월 1일부터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산업연구용품의 관세감면 대상품목을 253개에서 276개로 23개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장자동화시설재는 감면대상 품목이 432개에서 446개로 14개, 첨단산업시설재는 139개에서 154개로 15개가 추가됐다.

산업연구용품에 대한 관세감면은 기업 부설

연구소와 산업기술연구조합에서 사용하는 연구용 기자재를 대상으로 하며 감면 폭은 해당 관세액의 80%이다. 공장자동화 시설재는 관세감면 대상품목인 경우 중소기업은 50%, 일반기업은 40%의 관세를 감면해 주고 있다. 첨단산업시설재는 해당 관세액의 30%가 감면 된다.

정부는 이와 더불어 7월 1일부터 개청시간 외 통관절차 수수료의 사후 일괄납부범위를 전산뿐만 아니라 서면, 구두신청 등 모든 수단을 통하여 신청한 경우로 확대했다.

## 중소기업청, 출연연 기술이전 주관기관으로 생기원 선정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향상을 위해 올해 200개 유망 선진기술기업에 정

부출연연구기관 보유기술을 이전키로 하고 사업주관기관으로 한국생산기술연구원(원장 이

종구)을 선정, 최근 신기술이전 및 지도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중기청은 이에 따라 생기원에 9억원을 지원, 총 618개 유망 선진기술기업 중 200개를 선정, 이달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한국기계연구원 등 10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이 보유한 신기술에 대한 중소기업 이전을 추진할 계획이다.

기술을 이전받게 되는 유망 선진기술기업은 유망 중소기업 중 총매출의 2% 이상을 연구개발(R&D)에 투자하는 등 기술향상 주력기업으로 매년 중기청에서 생기원을 통해 신청 받아 정밀조사를 거쳐 선정하게 된다. 올해는

지난 5월 바이오시스 등 106개 업체를 신규로 지정한 바 있으며, 9월에 44개 업체를 추가로 지정할 예정이다.

유망 선진기술기업으로 지정되면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부터 3년 동안(연간 30일) 체계적인 기술지도를 받게 되는 것은 물론 △금융기관 및 중소기업구조개선자금 지원시 우대 △단체수의계약 물량배정시 우대 등 각종 정책지원을 받는다. 문의 중기청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smba.go.kr>)나 중기청 기술지도과(042-481-4461), 한국생산기술연구원(0417-5608-063)

## 중소기업청, 「Y2K 추진기업 확인서 첨부」 의무화 계획

중소기업청에서는 중소기업 지원시책과 Y2K 문제와의 연계를 통해 중소기업의 Y2K 문제해결을 촉진하고자 '99. 7월부터 모든 중소기업이 자금, 기술, 인력 등의 중소기업 지

원시책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서류에 지방 중소기업청이 발급하는 『Y2K추진기업 확인서』를 첨부할 것을 의무화할 방침임

## 특허청, 산업재산권 제도 전면 개편

앞으로 실용신안권을 출원한 후 3개월이면 권리 설정을 할 수 있고 특허와 실용신안 등 이중출원도 허용된다.

특허청은 1일 산업재산권제도를 전면 개혁

해 실용신안권 '선등록제도(무심사등록주의)'와 '이중출원제도'를 곧바로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실용신안권을 출원하고

도 2~3년을 기다려야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는데 비해 앞으로는 출원 후 3개월이면 권리행사가 가능해진다.

또한 종래에는 기술개발 결과에 대해 특허와 실용신안 중 어느 하나로만 출원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두 가지를 동시에 출원할 수 있다.

특허청은 기업의 기술개발의욕 제고와 지식재산권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이같이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부실권리의 양산을 막기 위해 실용

신안권자가 구체적으로 권리를 행사하고자 하는 때에는 반드시 특허청에 기술평가 청구를 통해 등록유지 결정을 받도록 하는 '기술평가 제도'를 도입했다.

또한 특허로 출원중인 기술을 실용신안으로도 출원해 조기에 권리화할 수 있으나 특허권과 실용신안권으로 이중 등록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는다. 실용신안등록을 받은 후 특허사정을 받은 때에는 실용신안등록을 포기하고 특허등록을 받아야 한다.